



임원배상책임보험 표준제안서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심사번호 MSIK-U298-N1 2020.09.29

A Member of **MS&AD** INSURANCE GROUP

목차

1. 보험의 기능 및 가입의 필요성

2.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개요

3. 약관의 주요내용

4. 손해배상청구사례

5. Q&A

1. 보험의 기능 및 가입의 필요성

임원을 과도한 법적 책임에서
해방시키고, 회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한국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만이
임원의 사적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임

임원의 변제력 확보를 통한
재정적 손실의 안전한 보전



회사 자신이 아닌 외부의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므로 회사 재정에도
역시 유익한 결과 창출

임원을 위한 보험을
마련함으로써, 유능한
경영진 확보와 영입에 도움

최종적으로 회사 및 임원이
함께 Win-Win 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장치임

2.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개념

피보험자인 회사의 **임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행한 업무 수행에 따른 **부당행위 (Wrongful Acts)**로 인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1) 임원이란? → 임원의 개념

(2) 부당행위란? → 임원의 의무

(3)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란? → 임원의 책임

2.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개념

(1) 임원이란?

■ 임 원 :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상업사용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 5항)

■ 이 사 : 회사의 수임자적 위치에서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법정의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
-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

■ 이사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전원의 이사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

2.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개념

(2) 부당행위란? (Wrongful Act)

회사의 임원의 의무의 위반, 태만, 실수, 잘못, 허위진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진술, 누락, 혹은 회사임원 자격으로서 잘못 행한 행위 및 회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 청구된 사항

2.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개념

(2) 부당행위란? (Wrongful Act)

- ① **선관의무 (상법 제382조 제2항)**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 ② **충실의무 (상법 제382조 제3항)**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비밀유지의무 (상법 제 382조 제4항)**
: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개념

(3)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란?

제3자에 대한 책임 (상법 제401조)

-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약관의 주요내용

(1) 보상하는 손해

- ① 임원의 업무상 과실 및 임원으로서의 법적 의무위반 등 부당행위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주주 또는 제3자와의 소송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소송 전 화해(합의)시 합의비용 보상
- ② 법률이나 정관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의 배상책임을 회사가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보상
- ③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등 보상(단, 형사소송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는 보상하지 않음)

※ 위의 사항은 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약관의 주요내용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임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 ② 대주주 및 지배주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대주주 및 지배주주는 발행주식의 15%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 ③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④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위의 사항은 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통약관은 필수 가입하셔야 하며, 더 많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약관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3. 약관의 주요내용

(3) 주요 특별약관

① 고용관행 확장보장 특별약관

a. 보상하는 손해의 확장 :

보험기간 중 “고용관행” 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대한 “손해배상청구” 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를 보상.

* 고용관행확장담보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회사, 개별피보험자(임원)및 직무와 관련된 종업원(들)을 포함합니다.

b. 고용관행이란 :

불법적 취업거절, 불법적인 승진의 불이행, 불평등한 해고, 괴롭힘을 포함한 불법적인 차별, 고용과 관련된 성희롱 등

c.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이익 또는 편의를 취득함으로써 인한 손해, 고의적, 사기적 행위 및 범죄행위에 기인한 손해

※ 위의 사항은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손해배상청구사고

(1)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유형별 원인

소송유형	청구원인	소송유형	청구원인
주주/투자자	경영권의 방어 및 취득 기업의 매수, 합병 주식공개상장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시 임원의 사적 이익추구 경영실적부진, 회사의 파산	고객/소비자 단체	계약상의 분쟁(제품, 서비스) 거래질서 문란행위
	종업원/ 노동조합	부당해고 고용계약위반 성차별, 차별대우 명예훼손 근로환경 및 안전관리	경쟁사 및 납품업체
정부기관			독점금지 부정행위, 사기

※ 위의 사항은 임원에게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의 유형을 나타낸 자료로써, 무조건적인 보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손해배상청구사고

(2) 소송사례 1

업체명	소송내용	소송금액	판결금액 (내용)
OO화학	이사들이 회사가 보유중인 자회사 지분 일부를 적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원들이 부당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됨	823억원	400여억원 지급판결
OO그룹	그룹의 회장이 저가로 자회사 주식을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10명의 소액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 제기.	1,950억원	소송 중
OO공사	소액주주 14명이 원가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공공 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2조 8천억원	1심,2심 원고패소

※ 위의 사항은 임원에게 제기될 수 있는 사고사례를 나타낸 자료로써, 무조건적인 보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손해배상청구소송사례

(2) 소송사례 2

업체명	소송내용	소송금액	판결금액 (내용)
OO공사	검찰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장을 상대로 해외 투자 시 배임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	형사소송	대법원 무죄 확정 소송비용(27억 발생)
OO	회사의 노조가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이유로 회사 및 임원을 상대로 고소	형사소송	소 취하 소송비용 발생
OO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노동위원회에 피해구제 신청함	-	화해합의 (2천만원)

※ 위의 사항은 임원에게 제기될 수 있는 사고사례를 나타낸 자료로써, 무조건적인 보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5. Q & A

1. 비상장사인데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 **상법상 임원의 의무와 책임은 회사의 상장여부와 상관없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상법상 임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사회전반적으로 법률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함으로써 임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변호사 선임비 등)도 담보가 가능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액 뿐만 아니라 소송 시 발생하는 방어비용도 담보합니다.**
- 약관에 따라 방어비용의 경우에는 판결이 완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선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최종 판결 후 해당 소송내용이 임원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가 불가할 것으로 판명된 경우(예: 임원의 고의에 의한 법령위반)에는 선지급한 방어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

3. 임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미국의 경우 Director 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으로 이사회 (Board of Director) 의 멤버이며 전반적인 회사경영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고 , Officer 는 이사회 의 결정사항을 받아 실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임원을 말합니다.
- 이 개념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Director 는 임원명부에 등재된 등기임원을(사외이사 및 비상근이사 포함), Officer 는 등기임원은 아니나 통상 임원의 직책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보 또는 이사대우 이상의 지위를 가진 자로 볼 수 있습니다 .
-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되는 임원의 범위는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자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정책을 운영하거나 그와 관련된 감독 , 통제권을 행사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하며 , 필요할 경우 보험증권상에 피보험자명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Thank You !